

담당	책임자	관리자	지점장

하나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 신청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지점 앞

기업정보	기업명(한글)		사업자번호			
	기업명(영문)		법인등록번호			
	기업주소		대표	성명(한글)		
			전화번호			
		FAX번호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해지 <input type="checkbox"/> 변경
------	---

하나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 계좌번호 (변경시 변경후 계좌번호)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MMDA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MMDA 각각 1계좌만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법인고객용)

본인은 하나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관계	
	주소		위임자	인(법인인감)

<p>[서비스 신청시 구비서류 및 인감]</p> <p>1.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실명증표, 법인인감</p> <p>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실명증표, 법인인감, 법인명의 위임장</p>
--

당사는 하나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 약관을 수령하고 동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당사는 하나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사의 기업명 및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카드 주식회사로 제공되고 활용토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인감)

하나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 신청 확인서(고객용)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해지 <input type="checkbox"/> 변경
------	---

기업명	
하나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 계좌번호	

하나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 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하나 파트너스 회원"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 제공하는 "하나 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하나 파트너스 회원"과 은행과의 제반 권리의무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정의)

① "하나 파트너스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은행의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은행 회원 가입과 동시에 은행과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간의 "하나 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 협약"에 따라 "하나 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를 제공받는 법인 기업을 말합니다. 단,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제외됩니다.

② "하나 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라 함은 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그 내용은 이 약관 제 3조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제 3 조 (하나 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

하나 파트너스 포인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원은 다음에서 정한 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카드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1)대기업/외감중소기업	주1)비외감중소기업
가입조건	총 여신한도 10억원 이상 주2)BiCNET 또는 BiCNET Light 가입, 포인트 적립 기업카드 신규	총 여신한도 5억원 이상
유지조건	MMDA를 제외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주3)월평균 30백만원 이상 주2)BiCNET 또는 BiCNET Light, 포인트적립 기업카드 월 1회 이상 사용	MMDA를 제외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주3)월평균 10백만원 이상

* 주1)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
주2)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자금관리서비스
주3) 월평균: 매월 1일~말일

2. 포인트 지급기준 대상 계좌는 회원별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MMDA 각 1계좌로 한정합니다.

포인트 적립에 사용되는 지급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MMDA 제외)

월평균(이상)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월 지급액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월평균(이상)	3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월 지급액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단, 대기업 또는 외감중소기업의 경우 30백만원 이상 구간부터 지급합니다.

2) MMDA(특인금리대상 예금 제외)

월평균(이상)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월 지급액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월평균(이상)	30억원	50억원	100억원			
월 지급액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단, 대기업 또는 외감중소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 구간부터 지급합니다.

3) 은행은 회원이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의 익월부터 매월 회원이 지정한 대상 계좌 월평균에 의거 계산된 현금을 카드사에 지급하고 카드사는 해당 회원의 법인카드 또는 임직원복지카드에 등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합니다.

3. 포인트 유효기간, 사용방법, 임직원복지카드 적립 등 포인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용방법은 카드사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 4 조 (약관 개정)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회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회원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회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원이 제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회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5 조 (회원 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은행이 정한 가입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고객으로부터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은행 영업점을 통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필요로 하며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동 기준을 만족하는 고객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드립니다.

③ 회원은 회원자격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 등 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기타 이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회원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 기재 혹은 고지한 경우

제 7 조 (기타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8 조 (분쟁조정 및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일반 상 관례에 따라 회원과 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에 이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 본 약관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